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그 의미와 대응



김 흥 기
지식산업센터 INNO 대표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03년 처음 입법논의가 시작된 이래 8년의 산고 끝에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집·이용할 경우에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만 한다.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 대리점, 변리사사무소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이는 9월 30일부터는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과 단체가 새로운 사업 환경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종래 정보보호의 대상에 머물렀던 개인과 단체도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식되어 법적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원명부를 수집·관리하는 개인 경우처럼 비록 영리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개인정보(수기문서 포함)가 유출되어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매우 큰 반면 아직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와 대응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의 신상·이력·재산 등 중요한 정보 도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각종 유출 사고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지난 2010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총 54,382건 중 법 적용이 제외된 사업자의 비율이 73.7%(40,431건)로 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제 9월부터는 이런 영역에도 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간 국내의 현실을 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에 익숙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식별정보(PII)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성향 등 개인들이 드러내기 꺼려하는 정보까지도 쉽게 수집해왔음이 사실이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수집해놓은 농협과 네이트 해킹과 전산망마비, 한국엡손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검·경이 수사 중이거나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들은 해킹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어 후속피해를 볼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개인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라는 보도를 듣지 못했다.

동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여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타법률에 의해 처리가 허용된 경우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개인정보최고책임자 아래 독립된 정보관리부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명확한 방침이 기업조직과 활동 전반에 전파되어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민간사업자·공공기관 포함)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의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적 의무 준수를 계율리 한 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감

수해야 한다. 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계율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안사고가 보안업무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되므로 이들의 보안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고객들의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의 평판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고객이 등 돌린 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가? 기업은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고객과 자원을 공급받고 사회는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기업은 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지속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에 보다 주의하고, 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투자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기업이 있어 고객과 종업원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에게 비슷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듯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집안 단속은 집주인이 해야 하듯, 개인정보보호는 그 정보주인이 잘 해야 합이 마땅하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결국 정보주체이기 때문이다. 경품·이벤트 행사,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이제부터는 개인들도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잘못 다뤄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2011. 9 |

